

대만 · 향항 · 일본의 수출검사제도시찰(상)

I. 시찰목적

금번 1967년도 A.I.D 기술원조 자금에 의한 기술훈련계획에 따라 동남아 일부지역인 대만과 향항 및 일본을 44일간에 걸쳐 여행을 하였던 바 대만의 수출검사제도를 비롯한 품질관리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검사제도운영상 참고에 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향항에 있어서의 수출면포에 대한 해외성가를 조사파악함과 아울러 일본에 있어서의 수출검사제도 특히 공장 검사제도를 조사연구하여 수출량의 증대와 앞으로 시행될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수반하는 업무량의 신속처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II. 시찰기간

대만	1967.5.20~6.16	28일간
향항	6.17~6.20	4일간
일본	6.21~7.2	12일간

III. 대만시찰

대만의 수출검사제도시찰에 있어 대만검사국과 국제경제협력발전위원회가 주선해준 일정계획에 따라 먼저 대북에서 2주일간 검험국과 대만방직품 시험 중심에서 훈련을 가졌으며 나머지 2주일간은 대만의 주요지방인 신주 대중 고웅 및 화연등지의 검험국에서 검사집행상황 및 주요생산공장의 품질관리상황을 시찰하였는바 이를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대만 면방직공업의 개황

대만의 면방직공업에 관한 1966년도 통계는 대만의 특수사정으로 입수치 못하였는바 1965년말에 면방직공업의 시설은

방직시설 553,000추

자동직기 11,820개 계 17,623대

보통직기 5,803대

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면 61,957M/T을 소비(S.F면은 4,804M/T)하여 면사 121백여만 Lbs

면포 3억여 yd를 생산하였으며 수출에 있어서는

면 사 16,428,500Lbs

면포(생지) 45,425,650yds

면포(가공지) 83,325,450yds를 시현하고 있는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등의 면포수입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새로운 품질의 제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감하여 1965년도에 시작한 제4차 4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섬유공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합섬방직사, 면/합섬 면/SF 혼방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하여 제품의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수출의 확대를 기도하고 있음.

2. 대만의 면제품 수출진흥정책

상술한바와 같이 시설면에서 우리나라 보다 부족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실정을 상회하고 있는 바 이는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진흥정책이 주효하였음에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출업자로부터 입수한 대만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수출면제품용의 원면 및 염료등의 원자재와 이에 따르는 부자재 수입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들 수 있는 바 방직수율이 92% 임에도 불구하고 85%를

기준으로 원면을 수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염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Loss를 인정하고 있다고 함.

2) 탈제면에서 국내용원면을 수입하는데 과해지는 수입액의 21.5%에 상당하는 세금을 면세해 주고 있다고 함.

3) 수출업자는 수출장려금 지급제도에 의하여 수출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함.

4) 수출책임제에 따라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출을 이행치 않고 국내에 출하할 때에는 벌과금(면사 1곤당 470NT \$)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주 NT \$: New Taiwan Dollar ; US \$ 1=NT \$ 40)

5) 수출보상제도에 의하여 대인니 면사위탁가공 및 대월차납등 특수지역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는 반면에 수출로 인한 결손을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하며 1966년도 대인니 면사위탁가공입란에 있어서도 상당한 덤핑을 하였다고 함.

6) 수출보장제도로써 정부보유외화의 할당제가 있는 바 할당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섬유제품에 있어서 모봉제품, 모직물, 면 및 합섬봉제품, 모사, 면직물가공품, 혼방사, 면직물생지품, 면사등의 순서로 할당액에 차가 있으며 특히 면방공장에서의 면제품 수입제한국에 면이외의 섬유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우대조치가 있다고 함.

3. 대만의 수출면제품의 규격 및 일부 제품의 단가

대만에 있어서 수출면제품의 규격을 조사함과 아울러 일부 품종에 대한 가격 및 견본을 수집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면 사

12's 20's 30's 40's 48/2's

2) 면 포

품 명	규 격			수 출 단 가
	폭	번 수	밀 도	
Sheeting	31 1/2	20×20	60×56	23.75 ¢ FOB
Denim	31 1/2	12×12	80×50	
Shirting	32	30×30	68×68	
Shirting	32	32×32	66×66	
Drill	33	32×16	73.5×56	
Poplin	34	30×30	106×56	
Sheeting	36	20×20	60×56	
Drill	36	14×14	68×56	
Duck	36	10×5	74×28	
Sheeting	36	32×21	63×61	
Twill	37 1/2	21×21	82×40	HK \$ 0.74 C&F Hong Kong
Shirting	37 1/2	26×26	72×60	
Poplin	38	30×30	106×60	
Poplin	38	36×32	130×70	
Shirting	38	32×32	68×66	
Shirting	38	30×36	72×69	
Poplin	39	25×25	96×64	
Sheeting	39 1/2	13.75×13.75	48×48	
Sheeting	39 1/2	15×15	48×48	
Sheeting	40	32×21	63×65	
Osnaburg	40	12×11	32×26	21.5 ¢ CIF Los Angeles
Osnaburg	40	10×6	40×28	
Sheeting	40	20×20	48×48	
Sheeting	40	14×16	48×48	
Sheeting	40	14×14	48×52	
Sheeting	40	14.5×14.5	48×52	
Sheeting	40 1/4	24×13	42×40	
Sheeting	42	10/3×10/3	34×34	
2/2 Twill	42 1/2	32×32	54×50	
Shirting	44 1/2	33×33	71×68	
Shirting	44 1/2	32×36	72×69	16 ¢ FOB
Shirting	45	32×40	64×56	

Sheeting	45	12×10	40×30	
Shirting	45	32×36	64×56	
Shirting	45	36×42	72×64	
Sheeting	46	21×11	42×44	17.85 ¢ C&F New York
Sheeting	46 1/2	14×14	48×52	18.5 ¢ FOB
Sheeting	46 1/2	24×13	42×44	16.85 ¢ C&F Charleston
T/C(65/35)	47	45×45	108×72	
Sheeting	47 1/2	20×20	50×50	
Sheeting	48	21×16	118×60	
Sheeting	50	16×16	54×48	
Shirting	50	30×30	68×60	
Sheeting	52	20×20	50×50	
Shirting	54	28×30	68×70	
Sheeting	54	16×16	56×52	
Sheeting	54	12×12	46×46	

3) 기타 봉제품

Napkin 생지 39 1/2~40" 14×11.5's 48×52 2.65 yds/Lb

Cut Size 18×18" 56 ¢ /dz CIF Charleston

18×19" 59 ¢ /dz "

Flannel Pajamas 36" 20×10 40×42 32yd/dz

\$ 7.389 21d/z FOB

Pillow Case Type 140 \$ 2.80/dz FOB

Type 128 \$ 3/dz FOB

Rain Coat \$ 37.64/dz FOB

Ⅳ. 대만의 수출검사제도

1) 개 황

중화민국의 상품검사제도는 1933년제정 상품검험법에 의하여 시작되었는

바 그 당시 상해 청도, 염주, 천륜, 한구 등의 항구에 검험국을 설치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등 각품종별로 검사기관이 성립되어 수출검사와 검사업무를 취급하여 오던중 1945년에 중화민국이 광복되자 농림청에 검험국을 설치하여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검사를 하여 왔었으며 1949년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에 천부하고 대만의 공업이 발전하여 공산품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이 요청되자 1959년 9월에 기존농림청 검험국가 건설청의 공업시험소를 통합하여 대만생정부의 일국으로 검험국을 설치하고 농공광산물의 검사와 동식물의 검역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는바 검사제도의 모든 정책적 사항은 중앙정부의 경제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집행사항은 검험국에 의하여 위탁 수행되고 있어

- (1) 수출입상품의 검사 및 동식물의 수출입검역업무
- (2) 생내 주요공산품의 품질검사
- (3) 수출산업공장의 기술지도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함.

2) 수출검사집행절차

(1) 수출검사를 시행키 위하여 먼저 검사품목을 공포하게 되어 있는 바 지정기준은

생활필수품

수출실적이 많은 품목

보건위생상 검사의 필요성이 되는 품목

신규제품으로서 발전성이 있는 품목을 위주로 하여 중앙정부의 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품질관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고 함

(2) 수출검사품목의 검사표준은 중앙정부의 표준국에서 제정하는 국가 표준(CNS)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CNS가 제정되는대로 이와 대체시키

고 있음.

(3) 검사방법에 해당하는 검사시행세칙은 경제부 혹은 검험국에 의해서 품목별로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이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함.

(4) 검사수수료는 대만생정부에서 책정공포하는 바 보통 경우는 국내평균 시가의 3/1,000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있으나 수출가격(FOB)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음.

3) 섬유제품의 검사제도

(1) 위탁검험

대만에서는 새로운 검사대상품목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해서 대만생검험국은 시설과 인원을 보충하기에 국가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에 임하여 섬유부문에서는 1965년도에 면사 면포생지품 면포가공품(31% 이상 면섬유 혼용직물 포함)을 수출검사품목으로 지정하고 검사기관으로서 대만방직품시험중심(Taiwan Textile Testing Center)과 2년간의 계약으로 검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케 하고 있는바 위탁검험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수출업자는 검험국에 구출가격(FOB)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첨부하여 수출검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② 검험국에서 수출검사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대만방직품시험중심에 검사지시를 하게 되는바

③ 대만방직품시험중심에서는 검험국의 수출검사지시에 따라 수출가격(FOB)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검사수수료로서 징수(수출검사수수료는 합계 0.3%)하고 국가 표준(CNS) 및 대만생구방직품출구 검험시행세칙(현재 개정단계에 있으므로 입수치 못함)에 의거 검사원이 공장에 임하여 소정의 Sample을 Sampling하여 대만방직품시험중심에 송부하면 타검사원이 품질검사

(이화학시험 및 품위검사)를 행한 후 이의 검사결과를 검험국에 보고하면

④ 검험국에서는 대만방직품시험중심으로부터 회보된 검사결과를 검토한
연후에 수출검사신청자에게 검험국명의로서 합격분에는 수출검사 합격증을,
불합격분에 대하여는 불합격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바 만일에 불합격 판정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때 검사수수료는 면제된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Sample을 채취하는 검사원과 실제로 제품의
품질검사(이화학시험 및 품위검사포함)를 행하는 검사원이 다른 사람에 의하
여 구분집행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소
요일을 별도로 정하여 그 전에 수검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신속을 기하고
있는바 소요일수는 면사에 있어서 Sampling후 4-7이며 면포에 있어서는 6일
내로 되어 있음.

(2)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① 면 사

면사의 검사기준은 CNS L 22(면사잠행검험표준)에 따르고 있는바 이는 JIS
ASTM 등의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대만내 공장실정을 다분히 감안하여 작성
된 것으로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A~G등급) A~E등급은 합격이고 그 이
하는 불합격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Sample Size는 다음과 같이 구
분하고

<u>Lot구성</u>	<u>Sample Size</u>
3 B/L 이하	1B/L
4~10B/L	2B/L
11~30B/L	3B/L

31~75B/L

4B/L

76~200B/L

5B/L

200B/L이상 매200B/L추가마다 1B/L 추가

200B/L미만일때는 추가치 없음.

각 B/L에서 JIS의 수출면사의 검사표준에 규정된 대로 Sampling하여 검사하며 검사항목은

중 량

수 분 율

강 력

강력변동계수

변 수

변수변동계수

연 수

품위(외시) 등으로 되어 있음.

② 면포생지품

면포생지품의 검사기준은 CNS L23(면포잠행검험표준(가공전))에 따르고 있는바 이것 역시 JIS, ASTM, Federal Specification CCC-T-191b 등의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대만내 공장실정을 다분히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갑-성급품)검사항목은

길 이

폭

중 량

밀 도

강 력

수 분 율

호부를 등의 이화학시험과 품위로 되어 있고 또한 Sampling은 품위검사에 있어서는

100필이하(1필30마기준) 2/100

100필이상 100필초과마다 1/100

이화학시험에 있어는

800yds이하 4점

801~22,000yds 6점

22,001yds이상 10점씩

Sampling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품위검사에 있어서 채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며 섬물종류(변수도 구분)에 따라 판정에 있어 등급화되어 있으며 이화학시험항목에 있어서도 과부족정도에 따라 등급화되어 있는 점임.

③ 면포가공품

면포가공품의 검사기준은 CNS L 62(면직물(가공후)(외소용))에 따르고 있는 바 내용은 JIS의 수출면직물(정리후품)의 검사표준과 같으며 앞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중이라 함.

(3) 기 타

① 검사용시료의 송부

담당검사원이 소정의 방법에 따라 Sample을 Sampling 한 연후에 Sample에 Sign을 필한 다음 수출업자로 하여금 즉시 대만방직품 시험중심에 송부케 하고 있음.

② 검사필제품의 검사표시

검험국이나 대만방직품 시험중심에서는 검사필표시를 행하고 있다고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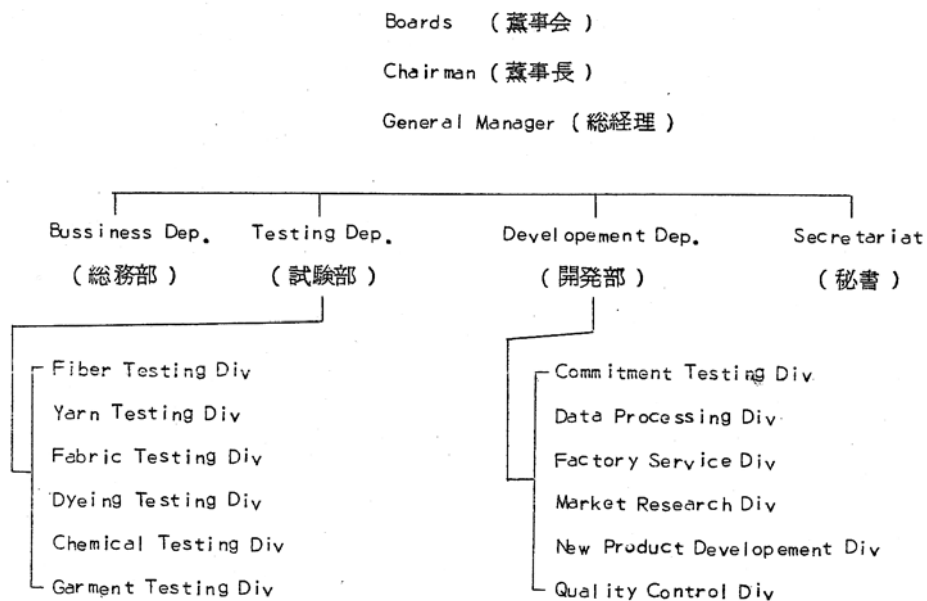
이를 확인코자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③ 포장검사는 행하지 않고 있음.

4) 대만방직품시험중심

① 기 구

정부 4 민간(면방공회) 3의 비율로 구성된 재단법인체로 1958년 창설되었는바 기구는 다음과 같음.



② 업무내용

- i) 수출검사품목의 검사
- ii) 원면 및 각종섬유의 시험
- iii) 운납방직품 및 일반섬유제품의 의뢰시험
- iv) 공장기술보급 및 지도(훈련포함)
- v) 시장조사 및 신제품연구개발
- vi) 품질관리지도
- vii) 국내외기술교류

③ 건 물

현재 사무실 50평 시험실, 150평, 계200평인바 명년에 600평으로 증축할 예정이다 함.

④ 구성인원

기술직 78%, 사무직 22%의 비율로서 총 50여명 종사하고 있음

⑤ 시 설

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84종으로 대개 New Type이고 Capacity도 큰바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음

i) 섬유시험용시설은

Clemson Bundle Strength Tester

WIRA Fiber Diagram

Vibroscope

Stelometer

Single Fiber Tester

WIRA Fineness Tester

Top Tester

등 20종

ii) 사육시험용시설은

Uster Single Yarn Strength Tester

Thread Winger

Crimp Tester

Rigidity Tester

Instron Tester Model TT-C

Course Length Tester

Yarn Image Contact Printer

등 23종

iii) 편직물류시험용시설은

Pilling Tester

Atlas Weather-Ometer

Universal Wear Tester

Spectrophotometer

Potentiometer & Melting Apparatus

Projectina

등 24종

iv) 화학시험용 및 기타시설은

Multipurpose Reflectometer

Macbeth Colour Matcher

Scorch Tester

Refractometer(for Liquid)

등 17종을 포함하여 총 8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연구용시험시설도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발주중에 있다고 함.

시험실용 방적시설일식

Sample Weaving Loom

High Temperature Laboratory Dyeing Units

Laboratory Padder

Laboratory Jig

Laboratory Boiler

Laboratory Finishing Units

Laboratory Curing Units

Laboratory Curing Units

Automatic Press for PP

High Temperature Oven for PP

Air Vacuum Units for PP

Dry Laundry Tumbler

등 15종

(주; KOTITI에 설치된 시설은 기재치 않았음.)

6) 품질관리상황

① 분산검사제도

수출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의 제품이 일정수준이상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1963년에 제정한 [국산상품생산공장분등검험변법]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의 정도(3년간실적을 기준)에 따라 갑을병정으로 등급화한 분등검사제도를 채택하고 수수료의 차등 검사절차의 간소화 일부검사항목의 검사면제 Sample Size의 감소등을 실시하여 자체품질관리를 권장하는 등 실효를 견우고 있다고 하나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품의 Variation이 심하여 본분등 검사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함.

② 품질관리

대만에서는 1952년에 QC가 도입된 이래 현재는 중국생산력 및 무역중심(한국의 KPC, KSA를 통괄한 기구에 해당)이 중심이 되어 널리 보급되어 있고 대개의 공장에는 QC의 Staff장이 있어 활발히 생산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에서도 필수과목으로 QC,IE 및 OR등의 과목을 이수케하고 있다고 하며 대만방직품시험중심의 실정에 있어서도 의뢰 시험의 비중이

40%(65년도실적)임을 볼 때 공장자체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가 하면 모직물메리야스제품 봉제품등이 아직 수출검사지정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수출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음) 수출업자 스스로가 대만방직품 시험중심에 의뢰시험을 하여 품질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

① 갑일방직공창

소재지 ; 대북시중정로 505

대 지 ; 약 15,000평

건 물 ; 약 4,000평

시 설 ; 면방적 64,000추

직 기 ; 1,140대

편직기 ; 300대

미 상 ; 1,000대

표백염색가공시설일식

종업원수 ; 방 직 ; 2,700명

염 색 ; 400명

의 류 ; 1,900명

계 약 5,000여명

수출상황 ; 수출실적 ; \$ 5,800,000(1966년)

품목별비중 ; 면사 ; 15.05%

면포 ; 44.21%

메리야스 및 봉제품 ; 40.74%

③ 소 감

i) 원료관리를 들 수 있는바 사용원면이 우리 나라에 비하여 저급품을 사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제품보다 양호하며 원면의 시험결과에 따라 원면조합을 행하고 있음.

ii) 또한 방적수율에 있어서도 92%정도라하니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iii) 제직공정에서 사절이 적어 제직능률이 좋다고 하는바 이는 준비기계의 점검 또는 보전의 철저에 있는 것 같으며 대개의 경우 준비기에 대한 관심도가 직기보다도 적은 편이나 실제로는 제품의 품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은 준비기편이 많으므로 준비기에 대한 보전이 절실히 요청됨.

iv) 원동방직에서는 방적, 제직, 염색가공 봉제 및 편직 등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생산원가가 상당히 절하될 것임.

V. 향항시찰

향항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면포의 해외성가를 조사파악키 위하여 판본 방적주식회사 향항대리점의 주선으로 환홍반전 야촌 Co, Rainbow Textiles China Dyeing Works 등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수출면직물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이를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우리나라 면직물의 품질은 날로 향상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하며 특히 가본방제품은 국제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

2) 향항에서 우리나라 면포생지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거친뒤 대부분 아프리카로 재수출한다고 하는바 대개 Wax Print용으로 S/# 2,210이나 S/# 2,003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정도의 결점은 가공으로 인하여 Cover할 수 있다고 하며 품질면에서 조금 저급품이라도 가격면에서 저렴하면 수입하겠다고 함.

3) T/C 혼방직물은 대개 표백하거나 Light Dyeing을 하여 재수출하거나 봉제용원반으로 사용하는 고급제품인바 품위를 좀더 향상시켜 주도록 요청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하여 수출하여 주도록 부탁이 있었음

4) ① 면직물가공품 특히 Flannel에 있어서는 품질면에서는 대만제품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가격면에서 고가이므로 수입키 곤란하다고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생산원가면서 고려하여 주도록 요청이 있었음

② 폭에 있어서 예컨대 규정치가 35/36" 이면 최소한도 35" 이상되도록 요청이 있었는데 폭의 허용범위등 우리나라의 검사기준등을 설명하여 납득시켰지만 봉제업자로서는 재단시 최소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폭의 허용범위는 필요치 않으므로 전부 규정치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 직물장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수출하여 주면 봉제업자로서는 작업이 간편할 뿐 아니라 Loss가 적다고 함.

④ 또한 가공직물에서 수축이 심하니 방축가공을 하여주도록 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원가관계상 곤란함을 설명하였으나 납득은 하면서도 봉제업자로서는 수축율문제가 매우 중요하니 가능한 한 이를 고려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5) 거래에 있어서 Delivery가 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한국의 수출업자는 Delivery기한을 간혹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염수하도록 부탁이 있었으며, 만일의 경우 Delivery가 늦어질 때에는 사전에 연결을 하여 주므로써 생산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 함.

6) 이들 가공업자들은 한국의 SF Muslin T/C직물 골텐직물등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음.

7) 참고사항

향후의 1965년의 면방적시설은 725천추이며, 섬기시설은 21,200대, 미상은

약 3만대라 하며 면포수출실적은 468백만 sq.yd라 함.